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03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030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016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 2024. 10. 31.

판결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016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1,137,4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137,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채권내역표

순번	대출일자	상품명	대출원금(원)	대출 종류
1	2016. 8. 30.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6,000,000	신용대출
2	2016. 8. 30.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489,000,000	담보대출
3	2016. 8. 30.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19,000,000	담보대출
4	2018. 1. 19.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153,000,000	신용대출

나. B은 2016. 8. 30. 채권내역표 순번 2, 3번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7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19.경 B의 C에 대한 채권내역표 순번 4번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그후 B를 대신하여 C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33,683,645원(= 원금 130,050,000원 + 이자 3,633,6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2020.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8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0. 12. 23. C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내역표 순번 1번 내지 3번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갑 5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D,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내역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으로 B의 채권자인데, 채무자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보전권리액인 131,137,484원(=채권내역표 순번 1번 기재 채권 106,000,000원 및 순번 4번 기재 채권 중 잔존액 25,137,4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131,137,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다만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20카단1761호)을 받고 그 가압류 등기를 마친 2020. 9. 17.경 무렵에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직전부터 C이 가압류결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화성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2019. 6. 12.(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2019. 12. 4.(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및 2020. 2. 6.(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2020. 7. 13., E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2020. 7. 17., 채권자 F의 가압류등기(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한함)가 2020. 8. 20. 각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C으로서의 위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세금채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위 세금 채납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있었고, 2020. 9. 15. 그 공매공고 기입등기가 경료된 점, ④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내역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채권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전제 하에 905,047,968원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1의 다.항 기재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전제 하에 134,746,260원의 배분을 요구하였는데, 2021. 1. 22. 배분요구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이 배분 매각대금 860,525,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원고는

732,000,000원을, 피고는 32,269,200원을 각각 배분받은 점, 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51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매절차에서 채권내역표 순번 1 기재 채권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님에도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된 732,000,000원 중 102,477,060원은 제1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2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배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102,477,060원 상당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⑥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제2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자신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일부 금원에 대한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양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제2근저당권자인 피고와 함께 배분을 받은 2021. 1. 22.경 또는 늦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517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제2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자신이 배분받은 금원 일부에 대한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2021. 11. 19.경에는 B이 C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범, 판사 권태관, 판사 장지혜

별지